[원고]

이름: 친구

주소: [주소 기재] 이름: 친구 부인 주소: [주소 기재]

[피고]

이름: 고등학교 동창 주소: [주소 기재]

[법적 쟁점]

명예훼손

[법조문]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2021다270654, 2022도699, 2022다280283

[청구 원인]

본 사건에서 원고인 친구와 친구 부인은 결혼식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가 손가락 욕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 사진이 사회적 공간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원고들은 모욕감을 느끼고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는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형법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의 요소를 충족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2021다270654, 2022도699, 2022다280283 등이 있으며, 이들 판례는 명예훼손을 주장할 때 피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진살한 사실을 언급했다는 반박을 할 경우, 그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사건에서 피고는 그의 행동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행동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소를 제기합니다.

[조언]

피고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과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제안하여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내거나, 그 행동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0[XX]년 [월] [일]

원고 [서명 또는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